



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911호 2023. 5. 10.(수)



선	기관의 장
결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3-57호	도로명주소 고시	2
거창군 고시 제2023-58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3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3-819호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5
거창군 공고 제2023-820호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4
거창군 공고 제2023-821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0
거창군 공고 제2023-822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1
거창군 공고 제2023-823호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0
거창군 공고 제2023-837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7
거창군 공고 제2023-851호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4

회 략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10.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쉬고갯길 75 등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4)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거창군수

1. 고시일자 : 2023. 5. 10.

2. 고시방법 : 거창군보,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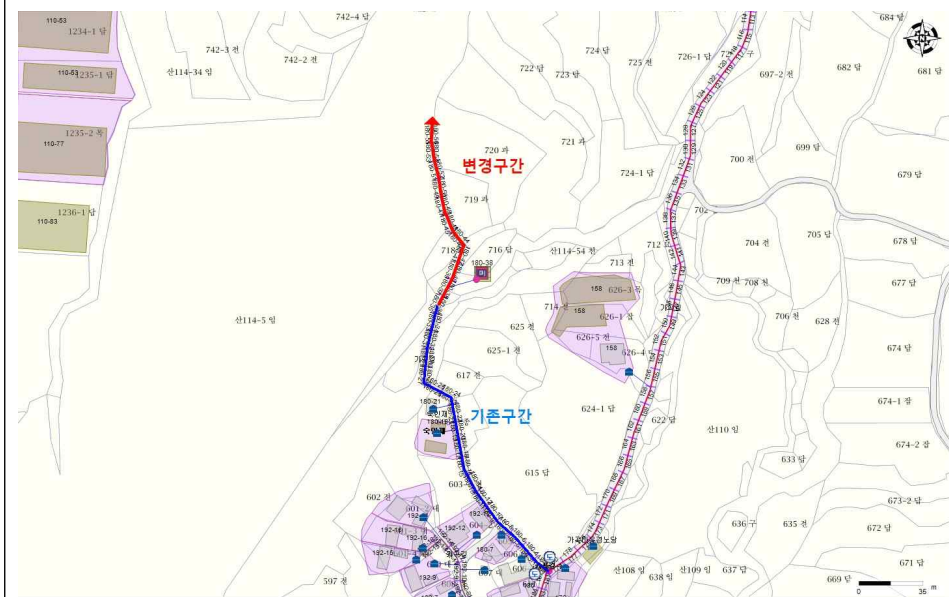
4. 참고사항

- 도로구간의 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 2023년 5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 변경 조서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종양선	건물 번호	사물 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1	남상면	변경 전	가곡길	남상면 대산리 615-1 (가곡길 180-1)	남상면 대산리 산170 (가곡길 180-36)	도면참조	1	1	종속구간 변경(연장)	직권
		변경 후	가곡길	남상면 대산리 615-1 (가곡길 180-1)	남상면 대산리 720 (지하동2길 180-56)	도면참조				

주소정보기본도



위성사진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라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일부 개정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 1) 총괄조정관 추가 구성 및 임부 부여(안 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제3호)
 - 2) 통제관 구성 및 임무 조정(안 제3조제1항제4호, 제3조제2항제4호)
 - 3) 담당관 구성 및 임무 조정(안 제3조제1항제5호, 제3조제2항제5호)
 - 나. 제4조(직무대행) : 본부장 직무대행 순서 변경(안 제4조)
 - 1) 차장·통제관·담당관 순으로 직무대행 ⇒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순으로 직무대행
 - 다. 【별표1】 ~ 【별표6】까지 별표 내용 일부 변경
 - ※ [붙임2] 별표 변경내용 파란색 표시, 삭제내용 빨간색 및 취소선 표시

4. 개정 조례안 : 붙임2

5. 입법예고기간 : 2023. 5. 4. ~ 5. 2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5. 24.(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2) 전화 055-940-3633, 팩스 055-940-3629, 이메일 leedjcool@korea.kr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붙임 2]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제4호를 제4호·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총괄조정관: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4.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장·소장 또는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과장
5.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제3조제2항제3호·제4호를 제4호·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5.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제4조 중 “차장·통제관·담당관”을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p> <p>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 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본부장: 거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p> <p>2. 차장: 부군수</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3. <u>통제관: 재난 총괄부서의 장</u></p> <p>4. <u>담당관: 재난종류에 따른 재난수습 부서의 장</u></p> <p>②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p> <p>2. 차장: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 보좌</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3. <u>통제관: 재난상황총괄,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u></p> <p>4. <u>담당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의 재난 상황관리, 실무반 임무 총괄</u></p> <p>③ (생 략)</p> <p>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u>차장·통제관·담당관</u>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p> <p>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 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본부장: 거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p> <p>2. 차장: 부군수</p> <p>3. <u>총괄조정관: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국장</u></p> <p>4. <u>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장·소장 또는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과장</u></p> <p>5. <u>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u></p> <p>②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p> <p>2. 차장: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 보좌</p> <p>3. <u>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u></p> <p>4. <u>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u></p> <p>5. <u>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u>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u>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3조제3항 관련)

자연재난 실무반별 업무

○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상황 관 리 총 괄 반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6)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7) 화상회의 준비·운영 8)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안전 총괄과 재난 수습 주관부서
	상황보고서 작성팀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3)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가) 태풍·호우 :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나) 대설 :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다) 지진 :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5)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6)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7)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8) TV 방송 모니터링 9) 민심동향, 미답사례 등 확인	안전 총괄과 재난 수습 주관부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1)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주민대피 지시·총괄 및 대피현황 관리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비상근무 발령·해지 6)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9)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NI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	안전 총괄과
	행정지원팀	1)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2) 비상소집 및 복무단속 3) 공무원 동원인력 급식 총괄 4)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행정과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2)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5)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6)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7) 사망자 장례 대책	복지 정책과 행복 나눔과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1)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한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환경과
긴급통신 지원반	1)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2)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안전 총괄과
협업 기 능 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1)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2)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문화관광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에너지 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1)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 복구 상황 파악 2)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경제 기업과
재난수습 홍보반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3)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4)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5)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6)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7)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8)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9)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본부,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기획예산 담당관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협업 기능 반	1)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공동 활용시스템 운영 2)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3)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4)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5)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6)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안전 총괄과
	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육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교통두절구간(도로, 항공) 실태 파악 보고 4)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건설 교통과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소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3)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4)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복지 정책과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거창 경찰서
	1)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2)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5)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거창 소방서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거창교육지원청,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북부지사,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KT거창지점,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부산지방기상청 및 그 밖의 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역자율방재단 등 단체)

사회재난 실무반별 업무

○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당 업무	담당부서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담당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의 재난상황관리, 실무반 임무 총괄		
상황관리총괄반	상황관리 총괄팀	1)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2)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3) 상황판단회의 및 보고회 자료 준비 4) 주민대피 지시·총괄 및 대피현황 관리 5) 비상근무 발령·해지 6) 상황근자 근무명령 및 국제관시스템(NI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	안전총괄과
	수습상황 파악팀	1)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2)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3)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4) 지역사고수습본부, 거창군 대책본부,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6)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7)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안전총괄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행정지원팀	1)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2) 비상소집 및 복무단속 3) 공무원 동원인력 급식 총괄 3)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행정과
협업기능반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2)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5)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6)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7) 사망자 장례 대책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1)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환경과
	긴급통신 지원반	1)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2)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안전총괄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1)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2)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문화관광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구 분	담당 업무	담당부서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1)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2)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경제기업과
재난수습 홍보반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3)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4)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5)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6)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7)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8)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9)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본부, 대책본부의 재난수습 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기획예산 담당관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1)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2)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Sharing System: DRSS)가동 3)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4)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5)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6)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안전총괄과
교통대책반	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육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교통두절구간(도로, 항공) 실태 파악 보고 4)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건설교통과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반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소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3)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4)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복지정책과

협업기능반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3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및 공공청사 사고 나.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 로서 다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재무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체육시설사업소 문화관광과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농업기술센터
	나. 저수지 사고	건설교통과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가스 누출 사고 나. 전력 사고	경제기업과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다. 황사 및 미세먼지 마. 식용수(지방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환경과 " " 수도사업소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경제기업과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나. 도로터널 사고 다. 육상화물운송 사고 라.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가. 건설교통과 나. " 다. " 라. 도시건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지역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총괄과
소방청	가. 화재·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안전총괄과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산림과

비고: 공동구, **위험물 사고** 등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 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1호관련)

□ **상시대비단계**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재난총괄 부서의 장
담 당 관	재난수습 부서의 장
실 무 반	주간 : 안전총괄과 야간 및 공휴일 : 당직근무자

- 비고 : 1. 재난총괄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에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황전파메신저(NDMS)를 관리하며, 재난상황 시 긴급재난문자시스템(CBS)을 통하여 상황전파를 할 수 있다.

□ **사전대비단계**

1. 가동기준 : 호우·대설 예비특보 등 비상단계 전 기상정보 발표 시
2.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재난총괄 부서의 장
담 당 관	재난수습 부서의 장
실 무 반	안전총괄과 1명

- 비고 : 1. 사전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 및 대책본부의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되, 소관분야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파견 요청시 즉시 파견하여 24시간 상황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재난총괄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수습 부서의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비상근무 인원 : **실무반 1명, 필요시 각 읍면 1명 비상대기 근무**

[별표 4]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6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 비상 I 단계

1. 가동기준

- 가. 호우대설 : 기상 종합정보 중 “주의보” 발표 시
- 나. 태풍 : 예비특보 발표 시
- 다. 그 밖의 지진 및 화산 등 : 규모 4.0이상 5.0미만 지진통보 또는 화산재주의보 발표 시 등

2. 실무반 편성 : 14명+α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과장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근무인원		총 14+α명	
반장(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	상황관리 총괄반 (3명)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안전총괄과(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1명)
		행정지원팀	행정과(1명)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 비상소집, 공무원 동원인력 급식 등
	협업기능반(10+α명)		기획예산담당관(α), 복지정책과(1+α), 행복나눔과(1+α), 경제기업과(α), 문화관광과(1+α), 안전총괄과(1+α), 산림과(1+α), 환경과(α), 건설교통과(2+α), 도시건축과(1+α), 농업기술센터(1+α), 보건소(α), 수도사업소(1+α), 거창경찰서(α), 거창소방서(α)

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비상근무 인원 : 상황판단 회의에 따라 **실무반 14명, 읍면 각 2명** 비상대기 근무를 편성·운영할 수 있음.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 가. 호우·대설 : 기상 종합정보 중 “경보” 발표 시
- 나. 태풍 : 태풍주의보 발령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다. 그 밖의 사항(지진 및 화산 등) : 규모 5.0이상 지진통보, 사망자 및 실종자 발생 또는 화산재경보 발표 시 등

2. 실무반 편성 : 20명+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과장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근무인원		총 20+α+β명	
반장(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	상황관리 총괄반 (3명)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안전총괄과(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1명)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상황보고서 작성팀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행정지원팀	행정과(1명) * 주요인사 방문시 의견, 비상소집, 공무원 동원인력 급식 등
협업기능반(16+α명)		기획예산담당관(α), 복지정책과(2+α), 행복나눔과(1+α), 경제기업과(1+α), 문화관광과(1+α), 안전총괄과(2+α), 산림과(1+α), 환경과(α), 건설교통과(3+α), 도시건축과(1+α), 농업기술센터(2+α), 보건소(1+α), 수도사업소(1+α), 거창경찰서(α), 거창소방서(α)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β)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파견 직원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등)	

다. 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팀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비상근무 인원 : 상황판단 회의에 따라 전 공무원의 **3분의1까지** 비상대기 근무를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본부장은 공무원의 **2분의1까지** 비상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 가. 호우·대설 : 기상 종합정보 중 “경보” 발표시, 또는 광역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나. 태풍 : “태풍경보” 발표 시, 또는 광역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다. 그 밖의 사항(지진 및 화산 등) : 규모 5.0이상 지진 발생이 통보되고, 광역적인 피해 발생 시(복합재난 등),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등

2. 실무반 편성 : 25명+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과장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근무인원	총 25+α+β명	
반장(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무반	상황관리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총괄반 (4+α명)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행정지원팀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 비상소집, 공무원 동원인력 급식 등
	협업기능반(20+α명)	행정과(1+α명) 기획예산담당관(1+α), 복지정책과(2+α), 행복나눔과(1+α), 경제기업과(1+α), 문화관광과(1+α), 안전총괄과(2+α), 산림과(1+α), 환경과(1+α), 건설교통과(4+α), 도시건축과(1+α), 농업기술센터(3+α), 보건소(1+α), 수도사업소(1+α), 거창경찰서(α), 거창소방서(α)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β)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파견 직원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등)

다. 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팀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비상근무 인원 : 상황판단 회의에 따라 전 공무원의 **2분의1까지** 비상대기 근무를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본부장은 공무원의 전 직원 비상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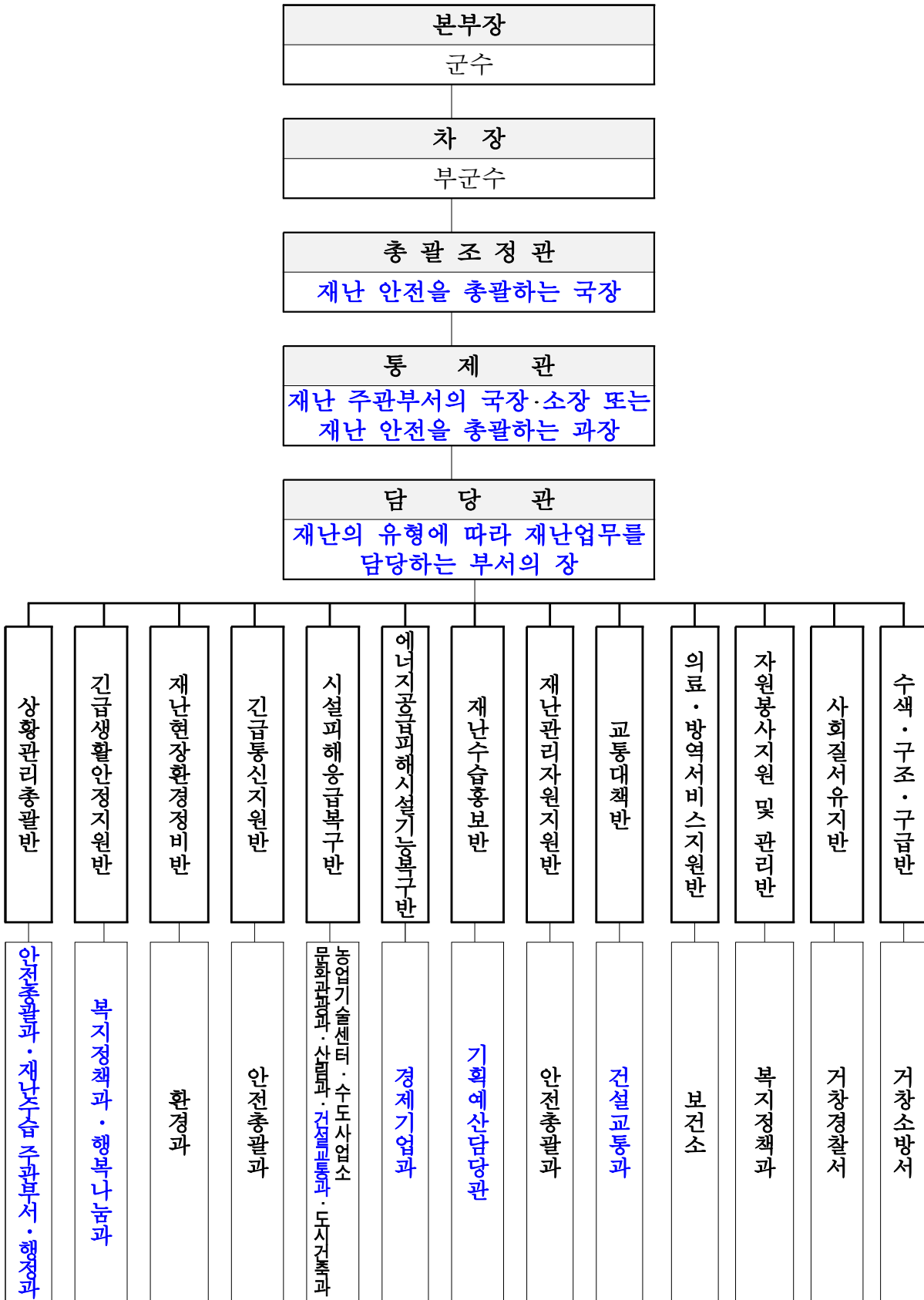
-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나.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실무반 편성 : $20+\alpha+\beta$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γ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통 제 관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과장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근무인원	총 $20+\alpha+\beta+\gamma$ 명		
반 장(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	상황관리 총괄반 (3명)	상황관리총괄팀	안전총괄과(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1명)
		수습상황파악팀	
		행정지원팀	행정과(1명)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 비상소집, 공무원 동원인력 급식 등
	협업기능반($16+\alpha$)		기획예산담당관(α), 복지정책과($2+\alpha$), 행복나눔과($1+\alpha$), 경제기업과($1+\alpha$), 문화관광과($1+\alpha$), 안전총괄과($2+\alpha$), 산림과($1+\alpha$), 환경과(α), 건설교통과($3+\alpha$), 도시건축과($1+\alpha$), 농업기술센터($2+\alpha$), 보건소($1+\alpha$), 수도사업소($1+\alpha$), 거창경찰서(α), 거창소방서(α)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β)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파견 직원(한국전력공사, 한국 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현장지원반(γ)		해당 재난관리 부서 소속 직원	

- ※ 비고 :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 현장지원반**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비상근무 인원 : 상황판단 회의에 따라 전 공무원의 **3분의1**까지 비상대기 근무를 편성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본부장은 공무원의 **2분의1**까지 비상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별표 6] 대책본부 구성도(제6조제2항 관련)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2020. 6. 9., 2020. 12. 22., 2021. 6. 8.>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2. 30.>
-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 [전문개정 2010. 6. 8.]

거창군 공고 제2023-820호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구성 조직개편사항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 조직개편 사항 반영함(안 제3조)
 - 현행 : 육군 제8962부대 제6대대장
 - 변경 : 육군 제8962부대 제3대대장
4. 개정 조례안 : 붙임2
5. 입법예고기간 : 2023. 5. 4. ~ 5. 2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5. 24.(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 2) 전화 055-940-3633, 팩스 055-940-3629, 이메일 leedjcool@korea.kr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붙임 2]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6대대장”을 “3대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군수 2. 거창경찰서장 3.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4. 거창소방서장 5. 육군 제8962부대 6대대장 6. 군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p>③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이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군수 2. 거창경찰서장 3.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4. 거창소방서장 5. 육군 제8962부대 3대대장 6. 군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p>③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이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p>

[붙임 3]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타법개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④ 삭제 <2013. 8. 6.>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안 제15조)

1) 기존 : 최대 100억원까지 ⇒ 변경 : 최대 200억원까지

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안 제19조)

1) 기존 :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2) 사유 : 조례 제24조(기반시설 사업지원 등)이 있어 삭제 후 신설

다. 이중지원 금지(안 제38조)

1) 예외규정 추가(기반시설 보조금 지원받는 경우, 부지 매입 용자 지원받는 경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경제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55-940-3349), 이메일(yangda00@korea.kr)

라. 제출기한 : 2023. 5. 24.(수) 18:00까지 도달

마. 제출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경제기업과)

바. 문의전화 : 055-940-3822

붙임 1.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자치법규명 :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기업지원 또는 투자유치 담당주사”를 “기업 또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100억원까지”를 “200억원까지”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군수는 관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의 신설·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1조제2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 매입 용자 지원을 받는 경우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당시의 조례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업지원 또는 투자유치 담당주사가 된다. ③·④ (생략)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업 또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도비 포함한다)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도비 포함한다)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다만, 골프장은 제외한다)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보조금 및 기금 등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군수는 관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이중지원 금지)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38조(이중지원 금지) ①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외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의 신설·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1조제2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 매입 용자 지원을 받는 경우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 더. (생략)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 마. (생략)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 나. (생략)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 나. (생략)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 30.] [일부개정 2023-03-30, 조례 제5359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3, 2021.9.30.>

가. 신설기업: 도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신설 2021.9.30.>

나. 증설기업: 도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 시설을 설치

하는 기업 <신설 2021.9.30.>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9.1.3.>

3.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개정 2019.1.3.>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 <개정 2019.1.3.>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 따른다. <개정 2019.1.3.>

6.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9.1.3.>

7. “균형발전대상지역”이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1.3.>

8. “전략산업”이란「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9.1.3.>

9.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신설 2019.1.3.>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 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10.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1.9.30.>

1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2.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14.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5.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16.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최근 3년간 기업 투자유치 체결실적 및 보조금 지원율 등이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

17.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 2023.3.30.>

② 제1항의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3., 2023.3.30.>

③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제10조에 따라 기업명

을 탄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6조의3(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30.]

제32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9.1.3., 2023.3.30.>

1. 제6조의2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 매입 용자 지원을 받는 경우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1.3.>, <개정 2023.3.30.>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변경 및 추가(안 제2조)

- 1) 기존 : 시설투자금액 ⇒ 변경 : 설비투자금액
- 2) 기존 : 상시고용인원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변경 : 고용보험료 납부 증명서
- 3) ‘관광사업’ 추가
- 4) ‘문화콘텐츠’ 추가

나.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내용 및 한도 금액 변경(안 제4조~제8조)

구 분	기 준	변 경	비 고
입지보조금	부지매입비의 50% (한도 5억 원)	부지매입비의 70% (한도 30억 원)	제4조
고용보조금	3억 원	20억 원	제5조
교육훈련보조금	2억 원	10억 원	제6조
설비보조금	시설투자금액 20억 원 초과의 2%(한도 2억 원)	설비투자금액 20억 원 초과의 10%(한도 30억 원)	제7조
이전보조금	5억 원 초과 이전시설가액의 3% (한도 2억 원)	5억 원 초과 이전설비가액의 10% (한도 10억 원)	제8조

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추가지원 금액 변경 및 내용 추가(안 제11조)

1) 기존 : 100억원 한도 ⇒ 변경 : 200억원 한도

2) 추가 : 착공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지급, 30%는 정산이후 지급

라. 관광사업 기반시설 지원(안 제15조)

1) 기존 : 조례 제19조 제1항 ⇒ 변경 : 규칙 제15조 제1항

마.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 신설(안 제15조의2)

1) 경상남도 조례 참고하여 내용 반영

바. 기금융자 절차 내용 및 한도 금액 변경(안 제23조)

1) 기존 : 융자대상 / 50억원 ⇒ 변경 : 융자대상 삭제 / 100억원

사. 보조금 보전조치 내용 명확화(안 제25조)

1) 보증보험증권 연차별 차감, 보증기일 설정 명시

4. 의견제출

가.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경제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55-940-3349), 이메일(yangda00@korea.kr)
- 라. 제출기한 : 2023. 5. 24.(수) 18:00까지 도달
- 마. 제출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경제기업과)
- 바. 문의전화 : 055-940-3822

- 붙임 1.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자치법규명 :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설투자금액”을 “설비투자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설투자금액”을 “설비투자금액”으로 “시설투자비용”을 “설비투자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1.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50퍼센트”를 “70퍼센트”로 “5억원”을 “30억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완료한 후에”를 “완료한 후 5년 이내에”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3억원까지”를 “20억원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2억원까지”를 “10억원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7조 조 제목 “(시설보조금)”을 “(설비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보조금”을 “설비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투자금액”을 “설비투자금액”으로 “2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억원까지”를 “30억원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보조금”을 “설비보조금”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개시일”을 “착공신고일”로 하며 “시설투자금액”을 “설비투자금액”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조례 제13조”를 “제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가액의 3퍼센트 범위에서”를 “설비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을 “설비”로 “시설투자금액”을 “설비투자금액”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투자금액”을 “설비투자금액”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2의2와 같이 하며, 200억원(설비투자비·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6조 및 별표 2의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중 “시설투자금액”을 “설비투자금액”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항을 제2항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 제1항) 중 “조례 제19조제1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보조금 및 기금 등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단,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의 경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원 기준일은 사업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지원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일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중 “시설보조금”을 “설비보조금”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3. 용자 한도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용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함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조금 또는 용자금 환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담보 확보 수단은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용자금의 상환을 위한 담보 확보는 운용 규정을 따른다.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당시의 규칙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차료와 <u>시설투자금액</u>을 말한다.</p> <p>2. “<u>시설투자금액</u>”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 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 <u>시설투자비용</u>을 말한다.</p> <p>4.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p> <p>가. 「<u>소득세법 시행령</u>」 제18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다만, 제4조의 입지보조금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비용(이하 “군비”라 한다)만 지원할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차료와 <u>설비투자금액</u>을 말한다.</p> <p>2. “<u>설비투자금액</u>”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 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 <u>설비투자비용</u>을 말한다.</p> <p>4.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p> <p>가. 「<u>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u>」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다만, 제4조의 입지보조금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비용(이하 “군비”라 한다)만 지원할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p> <p>10. “<u>관광사업</u>”이란 「<u>관광진흥법</u>」 제3조제1항의 <u>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u></p>		

<신 설>

제4조(입지보조금)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 부지를 매입할 경우 부지 매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5억원(도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비용(이하 “도비”라 한다)을 포함한다)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이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고용인원을 고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도비를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새로 사업장을 설치할 것
2.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씩, 12개월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이 상시근로자의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도비를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1.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제4조(입지보조금)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 부지를 매입할 경우 부지 매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도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비용(이하 “도비”라 한다)을 포함한다)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이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고용인원을 고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도비를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새로 사업장을 설치할 것
2.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씩, 12개월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이 상시근로자의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도비를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신규로 내국인을 10명 이상 고용할 것

2. 10명 초과 교육인원 1명당 월 100만원씩,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외국인 투자기업이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시설보조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도비를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설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2퍼센트 범위. 다만 연구소·ICT기업·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하는 기업은 시설투자금액이 10억원 초과 시

2.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3. 사업개시일부터 최장 3년 이내 투자하는 시설투자금액일 것

②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1. 신규로 내국인을 10명 이상 고용할 것

2. 10명 초과 교육인원 1명당 월 100만원씩,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외국인 투자기업이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설비보조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설비보조금(도비를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설비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퍼센트 범위. 다만 연구소·ICT기업·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하는 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이 10억원 초과 시

2. 기업당 최고 30억원까지

3.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일 것

② 설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도비를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5억원을 초과하여 이전하는 시설가액의 3퍼센트 범위에서
2. 기업당 2억원까지
3. 시설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시설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 기준상의 유형자산일 것

제10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한 기업이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국내에서 연속으로 2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을 것
3.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시설투자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및 추가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도비를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5억원을 초과하여 이전하는 설비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2. 기업당 10억원까지
3.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 기준상의 유형자산일 것

제10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한 기업이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을 것
3.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및 추가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하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요건에 해당할 것
2. 투자계획 완료 기한은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②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시설투자 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며, 100억원(도비를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 또는 임차 계약일부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도 규칙 제11조제5항=

<신 설>

도 규칙 제11조제6항=

④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특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하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요건에 해당할 것
2. 투자계획 완료 기한은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2의2와 같이 하며, 200억원(설비투자비·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 또는 임차 계약일부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6조 및 별표 2의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 용인원이 모두 제1항제1호의 지원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특

별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경우에는 제13조의 지원 기준·절차 등을 준용한다.

제13조(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입주하는 기업의 시설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지원범위는 시설투자금액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5조(관광사업 기반시설 지원)

<신 설>

조례제19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제1항 =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으로부터 3년 이내 한차례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 가. 군수와 협의하여 관광사업자가 사업 부지 확보를 완료한 경우
 - 나. 군수가 관광사업을 위한 시설

별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경우에는 제13조의 지원 기준·절차 등을 준용한다.

제13조(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입주하는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5조(관광사업 기반시설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보조금 및 기금 등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으로부터 3년 이내 한차례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 가. 군수와 협의하여 관광사업자가 사업 부지 확보를 완료한 경우
 - 나. 군수가 관광사업을 위한 시설

의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 수용으로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

2.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3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 설>

의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 수용으로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

2.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3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단,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의 경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원 기준일은 사

업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지원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일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외국인 투자지원 기준 준용)

제20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외국인 투자지원 기준 준용)

제20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설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기금융자 절차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용자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자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 함. 이 경우,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음

제23조(기금융자 절차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용자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자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 함. 이 경우,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음

2. 용자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과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과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일 것

3. 용자대상의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4. 용자 한도액은 부지매입비의 60퍼센트 이내, 최고 50억원 이내로 하고 용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함

②~④ (생략)

제25조(보조금 지원결정 및 보전조치) 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용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또는 용자금 환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저당권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이행담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용자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과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과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일 것

<삭 제>

3. 용자 한도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용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함

②~④ (현행과 같음)

제25조(보조금 지원결정 및 보전조치) 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용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또는 용자금 환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담보 확보 수단은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용자금의 상환을 위한 담보 확보는 운용 규정을 따른다.

[별표 2의2]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비·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설비 투자금액 ×5%	부지 매입비 ×5%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5%	부지 매입비 ×5%	30	투자금액 6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6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			35	투자금액 7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7%	부지 매입비 ×7%	56	투자금액 8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8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			70	투자금액 1,0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10%	부지 매입비 ×10%	100	

※ 설비투자비, 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

[별표 2의3]

정산금액 산정기준

구 분	산정 방식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금액 = 보조금액 × (1 - 투자금액 미달률(고용인원 미달률)) * 투자금액 미달률 = $\frac{\text{투자계획금액} - \text{실제 투자금액}}{\text{투자계획금액}}$ * 고용인원 미달률 = $\frac{\text{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text{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text{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div> <p>※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p>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및 신설·증설 기업 지원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금액 = 보조금액 × $(1 - \frac{\text{투자금액 미달률} + \text{고용인원 미달률}}{2})$ * 투자금액 미달률 = $\frac{\text{투자계획금액} - \text{실제 투자금액}}{\text{투자계획금액}}$ * 고용인원 미달률 = $\frac{\text{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text{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text{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div> <p>※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p>

[별표 3의2]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 기준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비·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40명이상	투자금액의 10%	120	투자금액 1,2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2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40명이상		140	투자금액 1,4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40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	투자금액의 10%	160	투자금액 1,6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6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		180	투자금액 1,8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8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60명이상	투자금액의 10%	200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 더. (생략)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 마. (생략)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 나. (생략)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 나. (생략)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3. 30.] [일부개정 2023-03-30, 규칙 제3340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 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 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

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5. “연구개발업”이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 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

6. “ICT 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제조업”이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8.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9.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0.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을 말한다.

11. “지식서비스산업”이란「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2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1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 같은 법 제17조부터 제17조의3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나.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13. “국가혁신융복합단지”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10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14.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의2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포함된 육성 대상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15. “사후관리기간”이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신설 2020.12.31.>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 ②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3.3.30.>

제5조(입지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고용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0명을 초과한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3.30.>

제8조(설비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구소·ICT 기업·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3.30.>

제9조(이전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이전하는 설비가액의 10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3.3.30.>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별표 2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개정 2021.9.30.>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2의3과 같이 하며, 200억원(설비투자비·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9.30., 2023.3.30.>
-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 ⑥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단,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 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의 경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④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지원 기준일은 사업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지원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일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30.]

제18조(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 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개정 2022.4.14.>
 3.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에는 지원 비율을 각각 1퍼센트씩 추가로 지원하며, 이전 후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별표 2의 범위

에서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9조(기금용자 절차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용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

1. 용자대상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2. 용자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과「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과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용자 한도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용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자의 지원 요건 및 기준은 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의 접근성, 집적도, 인력수급, 부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으며,「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이하 “운용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용자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별표 4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총점이 5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2.5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평균매출액,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총자산 증가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를 일컫는다) 평가 점수의 합이 35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27.5점) 이상인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용자를 신청한 시장·군수 및 운용 규정에 따라 기금 용자 업무를 위탁받은 취급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14.>

⑤ 용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 ① 도지사는 보조금 또는 용자금 신청서를 접

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③ 시장·군수가 기업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와 융자금 상환 등을 위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담보 확보 수단은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담보 확보는 운용 규정을 따른다.
- ⑤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도 또는 시·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시·군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기관 명칭 현행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체계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에 거창구치소장 추가(안 제3조 제2항)

나. 위원 기관명칭 변경(안 제3조 제2항)

- 육군 제8962부대 6대대장 ⇒ 육군 제8962부대 3대대장
- 339군사안보지원부대 안보지원관 ⇒ 353방첩부대 방첩관

다. 간사 명칭 변경(안 제3조 제7항)

- 제8962부대 6대대 작전장교 ⇒ 제8962부대 3대대 정작과장
- 제8962부대 6대대 동원장교 ⇒ 제8962부대 3대대 동원과장
- 거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 ⇒ 거창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라. 위촉직 위원 임기 신설(안 제3조 제8항)

- 위촉직 위원의 임기 2년, 연임 가능

마. 통합방위 지원본부 소재지 현행화(안 제4조 제4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안전총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방 법 : 우편, 팩스(055-940-3629), 이메일(dpql007@korea.kr)

라. 기 한 : 2023. 5. 24.(수) 18:00까지 도달

마. 주 소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안전총괄과)

바. 문의전화 : 055-940-3662

붙임 1.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자치법규명 :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육군 제8962부대 6대대장”을 “육군 제8962부대 3대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339군사안보지원부대 안보지원관”을 “353방첩부대 방첩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거창구치소장

제3조제7항제2호제가목 “육군 제8962부대 6대대 작전장교”를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정작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제나목 “거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을 “거창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으로 하고 같은항 제3호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8962부대 6대대 동원장교”를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동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제4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4. 12. 31.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3조(협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창군의회 의장 2. <u>육군 제8962부대 6대대장</u> 3. <u>339군사안보지원부대 안보지원관</u> 4. 국가정보원 관계자 5.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6. 거창경찰서장 <p><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경남서부보훈지청장 8.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9. 거창소방서장 10. 거창군 재향군인회장 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자 <p>⑦ 협의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의 이해를 돕기위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총괄과장 2. 작전담당 간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육군 제8962부대 6대대 작전장교</u> 나. <u>거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u> 3. 예비군담당 간사 : <u>육군 제8962부대 6대대 동원장교</u> <p>< 신 설 ></p> <p>제4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④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군 본청에,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읍·면의 <u>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둔다.</u></p>	<p>제3조(협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창군의회 의장 2. <u>육군 제8962부대 3대대장</u> 3. <u>353방첩부대 방첩관</u> 4. 국가정보원 관계자 5.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6. 거창경찰서장 7. <u>거창구치소장</u> 8. 경남서부보훈지청장 9.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10. 거창소방서장 11. 거창군 재향군인회장 1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자 <p>⑦ 협의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의 이해를 돕기위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총괄과장 2. 작전담당 간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육군 제8962부대 3대대 정작과장</u> 나. <u>거창경찰서 정보안보의사과장</u> 3. 예비군담당 간사 : <u>육군 제8962부대 3대대 동원과장</u> <p>⑧ <u>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제4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④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군 본청에,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읍·면의 <u>행정복지센터에 둔다.</u></p>

관 련 법 령

□ **통합방위법**[시행 2021. 3. 23.] [법률 제17686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통합방위법 시행령**[시행 2023. 5. 2.]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 11. 1., 타법개정]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② 지역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③ 지역협의회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④ 지역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 ⑤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⑥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⑦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 ⑧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2. 개정이유

코로나 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상생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인용조문 정비(안 제5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 나.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9조의2)
 - 2022. 12. 31. ⇒ 2023. 12. 31.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55-940-3219)

라. 제출기한 : 2023. 5. 30.(화) 18:00까지 도달

마. 제출주소 : (우50132) 거창군·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재무과)

바. 문의전화 : 055-940-3230

붙임 1.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자치법규명 :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의2 중 “2022년”을 “2023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 ----- ----- ----- ----- ----- -----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2. (생략)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별표에 따른 경감률을 곱한 금액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률은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3. 「수산식품산업의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 -----

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

2023년-----

-----2023년-----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 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을·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 5.(생략)
 - ③ ~ ⑧ (생략)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 카.(생략)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14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2.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4.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 ⑥ (생략)

거창군 공고 제2023-851호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2. 개정이유

신입생 유치를 위한 인구증가와 승강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대학교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등록금 지원 규정 신설 (안 제3조의2)

- 1) 대학 등록에 필요한 필수경비(수업료 및 입학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 지원대상 :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군수가 정하는 성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자

4. 예고기간 : 2023. 5. 10.(수) ~ 5. 30.(화)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경제기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경제기업과)

- 전화번호 : 055) 940-3365 / FAX : 055) 940-3349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경제기업과 기업승강기담당 **☎(055)940-33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일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자치법규명 :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등록금 지원) ① 군수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대학 등록에 필요한 필수경비(수업료 및 입학금을 말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군에 주소를 둔 대학 입학생 및 재학생
2. 군수가 정하는 성적 등의 요건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제외대상이나 범위·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3학년도 등록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0호, 2022. 10. 18., 타법개정]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89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12호, 2022. 2. 3., 타법개정]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